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 Management System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표준 번호	SHP-603
제정 일자	2015.10.13
개정 일자	2020.01.10
페이지	1/8

[개정이력]

제개정번호	해당항목	개 정 내 용	제개정일자	비 고
0	전체	OHSAS 18001:2007 신규 인증에 따른 제정	2013.08.01	
1	전체	OHSAS 18001:2007 기간만료에 따른 갱신	2015.10.13	
2	전체	ISO 45001:2018 인증전환에 따른 개정	2020.01.10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 Management System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표준 번호	SHP-603
제정 일자	2015.10.13
개정 일자	2020.01.10
페이지	2/8

목 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 FLOW
5. 업무절차
6. 특기사항
7. 관련기록
8. 관련표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 Management System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표준 번호	SHP-603
제정 일자	2015.10.13
개정 일자	2020.01.10
페이지	3/8

1. 목적 및 적용범위

당사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 및 기타요건을 파악하고 등록,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한다.

2. 용어의 정의

2.1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당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보건 위험평가 등과 관련된 각종 법규, 기타규제, 협약, 조례, 관련지침등을 말함.

2.2 법규파악

적용대상 법규에 대해 당사의 관련 여부를 판별하는것.

2.3 법규등록

파악된 법규중 조직활동에 적용되는 환경 및 안전·보건 관계, 해당조항, 그 내용등을 법규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도록 총괄관리한다.

3.2 경영자 대리인

당사에 적용되는 환경, 안전·보건 법규 및 기타요건의 최신상태 및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3.3 경영지원팀장

당사의 환경법규 등록부를 승인하고, 환경, 안전·보건 법규 및 기타요건의 최신상태 및 준수여부를 내부환경 감사시 파악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4 환경/안전/보건 담당

환경/안전/보건 법규 및 기타요건의 최신본 입수, 등록 및 유지관리하며, 관련 문의사항 접수시 법규를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 Management System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표준 번호	SHP-603
제정 일자	2015.10.13
개정 일자	2020.01.10
페이지	4/8

4. 업무 FLOW

주요 활동	입 력	주관팀 : 경영지원팀				출 력	성과 지표	보고 주기	승인 권자	비 고
		최고경영자	경영자대리인	경영지원팀	관련팀					
계획	*업무수행시 요구되는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입수요청	*입수요청 문서/ E-Mail	-	필요시	관련 팀장	-
	*입수요청 문서/ E-Mail			회사의 환경 및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파악		*환경/안전보건관계법규 입수자료 *법규 적용여부 결정서	-	수시	환경담당자 안전관리자	업무절차 5.1.1 5.1.2
실시	*환경/안전보건 관계법규 입수자료 *법규적용여부결정서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 등록대장 작성 및 관리		*법규등록대장 *법규등록부	-	수시	팀장	-
	*법규등록대장 *법규적용여부결정서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PC저장 / 공유		*환경/안전·보건 관계법규	환경법규 공유건수	수시	환경담당자 안전관리자	업무절차 5.2.1 특기사항 6.1
체크	*신규 제,개정된 환경/안전·보건법규			지속적 개정 및 점검		*법규등록대장 *법규준수평가표	-	수시	환경담당자 안전관리자	특기사항 6.1
	-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활용	-	-	-	-	업무절차 5.2.1 특기사항 6.1
실시	*환경/안전·보건 관계법규				문의사항 발생	*문의사항 문서/ E-Mail	-	-	-	-
	*문의사항 문서/ E-Mail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 문의사항 접수/검토		*문의사항 문서/ E-Mail	-	발생시	환경담당자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 Management System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표준 번호	SHP-603
제정 일자	2015.10.13
개정 일자	2020.01.10
페이지	5/8

주요 활동	입 력	주관 팀 : 경영지원팀				출 력	성과 지표	보고 주기	승인 권자	비 고
		최고경영자	경영자대리인	경영지원팀	관련팀					
실시	*문의사항 문서/ E-Mail			C1 ↓ 법규 문의사항 결과 통보		*결과 E-Mail	-	발생시	환경담당자 안전관리자	-
	-			↓ 환경/안전/보건 법규준수		-	-	-	-	업무절차 5.3.1
체크	*내부품질,환경 감사 Check-List		환경 및 안전보건 내부심사 실시 내부심사 P			*내부감사결과 보고서	-	2회/년	품질 팀장	업무절차 5.3.2 5.4.3
조치	-			환경 및 안전보건설비 보완 환경관리 P		-	-	발생시	팀장	업무절차 5.3.3
	-	↓ 결과보고				-	-	2회/년	대표 이사	-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 Management System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표준 번호	SHP-603
제정 일자	2015.10.13
개정 일자	2020.01.10
페이지	6/8

5. 업무절차

5.1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 입수

5.1.1 환경담당자는 회사의 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시행일 이전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입수한다.

5.1.2 안전관리자는 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를 시행일 이전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입수한다.

5.1.3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는 다음 기관 및 단체를 통하여 입수한다.

- 1) 환경부 2) 총무처 3) 시,도청 4) 자원재생공사 5) 환경보존협회 6) 공업단지 관리공단 7) 환경관리인 협회 8) 법제처 9) 지식경제부
- 10) 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11) 고용노동부 12) 소방방재청 13) 지자체조례 14) 기타 환경 및 안전관련 조직

5.2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의 활용

5.2.1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담당자는 입수된 법규에 대하여 당사의 환경 및 안전·보건 활동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2.2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 담당자는 전자매체(컴퓨터)로 환경법규를 공유하여 회사임직원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1 참고]

5.2.3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환경(또는 안전보건)법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E-Mail 혹은 문서로 환경담당자(또는 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한다.

5.2.3 환경담당자(또는 안전관리자)는 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과를 E-Mail 혹은 문서로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5.3 환경법규 준수, 준수도 점검 및 보고

5.3.1 회사의 임직원은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회와 리스크로 귀결된다.

5.3.2 환경안전관리자는 등록된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의 최신상태 및 준수여부를 내부감사 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5.3.3 경영지원팀장은 현재 방지설비로는 환경 및 안전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보고한다.

5.4 환경관련 기타요건의 관리

5.4.1 환경담당 및 안전담당자는 환경 및 안전관련 요건을 파악하여 준수하고 관리되어야하는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4.2 환경 및 안전보건 담당자는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등록절차로 환경관련 기타요건을 관리한다.

5.4.3 경영자 대리인은 환경 및 안전보건 관련 기타요건의 준수여부를 내부심사 시 파악하여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 Management System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표준 번호	SHP-603
제정 일자	2015.10.13
개정 일자	2020.01.10
페이지	7/8

6. 특기사항

6.1 환경법규 활용절차

구 분	업 무 절 차	담당자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공유	1. 각 담당자는 입수한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를 본인의 PC에 설치한다 2. 법규적용여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적용되는 법규를 등록한다. 3. 결정된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및 관련 조항을 등록한다. 4. 회사의 전사원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회사 전산망에 공유시킨다. 5. 공유디렉토리 : 총무팀/바탕화면/환경법규/안전·보건법규 6. 각 담당자는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활용방법을 전사원에게 통보한다.	환경: 환경담당자 안전: 안전관리자 보건: 보건관리자
활 용	1. 업무수행시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환경 및 안전·보건법규가 공유되어있는 디렉토리에 접속하여 환경법규를 확인한다. 2. 환경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3. 각 담당자는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평가표를 활용하여 1회/년 이상 평가한다.	전 임직원
지속적 개정	1. 각 담당자는 환경법규 제공 사업자로부터 신규 제·개정된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를 입수하면 변경 및 추가된 내용을 전산망에 공유시킨다. 2. 각 담당자는 환경 및 안전·보건 법규 제공 사업자가 성실히 제·개정된 법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환경: 환경담당자 안전: 안전관리자 보건: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OH&S Management System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표준 번호	SHP-603
제정 일자	2015.10.13
개정 일자	2020.01.10
페이지	8/8

7. 관련기록

8. 관련표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경영지원팀	NO	관련 절차서	번호
1	법규등록대장	SHP-603-01	영구	경영지원팀	1	기록관리 절차서	SHP-704
2	법규 및 그밖의 요구사항 등록부	SHP-603-02	영구	경영지원팀	2	사업계획관리 절차서	SHP-602
3	법규 준수 평가표	SHP-603-03	영구	경영지원팀	3	의사소통 절차서	SHP-702
					4	내부심사 절차서	SHP-902
					5	법규등록 및 준수관리 절차서	SHP-601
					6	안전보건 개선계획 지침서	SHI-6021

법규등록대장

작성팀	경영지원팀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책임자	송기운					
문서번호						
NO	법령명	적용여부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제정/개정 사유
1	산업안전보건법	○	2020.01.10	-	-	ISO45001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제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0.01.10	-	-	ISO45001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제정
3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0.01.10	-	-	ISO45001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2020.01.10	-	-	ISO45001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제정
5	전기사업법	○	2020.01.10	-	-	ISO45001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제정
6	소음·진동 관리법	○	2020.01.10	-	-	ISO45001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제정
7	화학물질관리법	X	2020.01.10	-	-	ISO45001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제정 (현재 해당사항 없음. / 추후 해당사항 발생시 법적내용 반영)
8	위험물안전관리법	X	2020.01.10	-	-	ISO45001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제정 (현재 해당사항 없음. / 추후 해당사항 발생시 법적내용 반영)
9						
10						

작성부서		경영지원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등록부(산업안전보건법)				Rev.	제/개정 일자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책임자		송기운							2020.01.10				
문서번호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2019.01.15 개정	2020.01.16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황	발생시	송기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9.01.15 개정	2020.01.16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대행업체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상태보고서	2회/월	송기운 / 대한산업안전협회				
		2019.01.15 개정	2020.01.16	제18조 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대행업체 : ㈜우진산업보건연구원	보건관리상태보고서	1회/월	송기운 / ㈜우진산업보건연구원				
		2019.01.15 개정	2020.01.16	제16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증	16시간/년	송기운 / 관리감독자				
		2019.01.15 개정	2020.01.16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100인 이상 사업장 규모로 확대시 적용 예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회/3개월	송기운 / 대한산업안전협회				
		2019.01.15 개정	2020.01.16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생명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발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도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산업안전대행 방문시(2회/월) 현장 점검 및 개선 2. 자체안전점검 실시 3. 보호구 지급(귀마개, 안전화 전 직원), 안전모, 절연장갑, 보안경, 보안면(공무)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안전관리점검 보호구지급대장	2회/월 1회/월 수시	송기운 / 대한산업안전협회				
		2019.01.15 개정	2020.01.16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4. 계측장비(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우진산업보건연구원 방문시(1회/월) 현장 점검 및 개선 2. 근골격계질환 유해인자 조사 3. MSDS 교육	보건관리상태보고서 근골격계질환 조사표 교육일지	1회/월 1회/3년 1회/년	송기운 / ㈜우진산업보건연구원				
		2019.01.15 개정	2020.01.16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대상 반기별 시행	작업환경측정결과서	2회/1년	송기운 / 대한산업보건협회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2019.01.15 개정	2020.01.16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각 작업현장마다 금지 및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를 규격에 맞게 부착	안전,보건표지	수시	송기운	
		2020.06.09 개정	2020.06.09	제29조 근로자에대한 안전 보건 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 1. 정기안전교육 : 1회(2시간)/매월 (3년보관) 2. 작업변경시 안전교육 : 2시간 3. 특별안전교육 : 16시간 (영구보관) 4. 채용시 안전교육 : 8시간 (영구보관)	안전보건교육일지	매월 / 수시	송기운 / 관리감독자	
		2019.01.15 개정	2020.01.16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부(제5조의 경우는 같은 호 각 속에 따른 기관의 경우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선임후 3개월내 신규교육 후 1회/2년 보수교육 2. 관리감독자 - 1회/매년	교육이수증	1회/년	송기운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2019.01.15 개정	2020.01.16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매년 3~4월)	위험성평가	1회/년	송기운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2019.01.15 개정	2020.01.16	제93조 안전검사	<p>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유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실시</p> <p>1) 프레스 2) 압력용기 3) 크레인</p>	안전검사 결과서	1회/2년	송기운	
		2019.01.15 개정	2021. 01. 16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p>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시행일 : 2021. 1. 16.] 제114조</p>	<p>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내에 MSDS를 게시 및 관리</p>	MSDS	수시	송기운	
		2019.01.15 개정	2020.01.16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p>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일반검진 실시</p>	일반건강검진표	1회/년	송기운	
		2019.01.15 개정	2020.01.16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p> <p>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p> <p>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p>	<p>특수검진, 배치전검진</p>	<p>특수건강검진표 배치전건강검진표</p>	<p>특수검진 (1회/년) 배치전검진 (입사시)</p>	<p>송기운 / 오산버팀병원</p>	

작성부서	경영지원팀
책임자	송기운
문서번호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등록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v.	제/개정 일자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2020.01.10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05.26 개정	2020.05.26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p>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p> <p>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p> <p>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p> <p>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p> <p>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p> <p>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p> <p>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p>	산업재해 인정기준관련 법적 변경사항 모니터링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 진행	산업재해조사표 사고보고서	수시	송기운	

작성부서	경영지원팀
책임자	송기운
문서번호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등록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Rev.	제/개정 일자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2020.01.10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 10. 16. 개정	2018. 10. 16.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p>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p> <p>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p> <p>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p> <p>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p> <p>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p> <p>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p> <p>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p> <p>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p> <p>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p> <p>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p> <p>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p> <p>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p> <p>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p> <p>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의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p> <p>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p> <p>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p> <p>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p> <p>[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2015. 1. 8.] 제20조제2항,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p>	소방안전대행업체 : 주연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시설 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계획서 소방시설 점검표	수시	송기운 / 주연소방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09.05 개정	2018.09.05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p>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9., 2017. 7. 26., 2018. 9. 5.></p> <p>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10.></p> <p>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9., 2017. 2. 10.></p> <p>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환경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9., 2018. 9. 5.></p> <p>[전문개정 2014. 7. 8.] [제목개정 2015. 1. 9.]</p>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실무교육 : 선임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실무교육 후 1회/2년	교육 이수증	수시	송기운	
		2017.07.26 개정	2017.07.26	제14조의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p>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극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 9.></p> <p>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p> <p>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9.></p> <p>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9.></p> <p>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점검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9.></p> <p>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9.></p> <p>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9., 2017. 2. 10.></p> <p>⑦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 9., 2017. 7. 26.></p> <p>[본조신설 2014. 7. 8.] [제목개정 2015. 1. 9.]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5. 1. 9.>]</p>	소방훈련 실시 비상사태 조직도 관리	소방훈련기록부 비상사태 조직도	1회/년	송기운 / 주연소방	
		2018.09.05 개정	2018.09.05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p>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3., 2018. 9. 5.></p> <p>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 4. 16., 2017. 2. 10.></p> <p>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3., 2014. 7. 8.></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2. 3., 2014. 11. 19., 2017. 7. 26.></p>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실시업체 : 주연소방(소방안전대행업체)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1회/년	송기운 / 주연소방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2019.08.13	2020.08.14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p>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 9., 2017. 2. 10., 2017. 7. 26., 2019. 8. 13.></p> <p>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2019. 8. 13.></p> <p>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0.> [전문개정 2014. 7. 8.] [시행일 : 2020. 8. 1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p>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밀양소방서)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1회/년	송기운 / 주연소방	

작성부서	경영지원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등록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Rev.	제/개정 일자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책임자	송기운			2020.01.10				
문서번호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2018. 03. 20 개정	2018. 03. 20	제15조(안전관리자)	<p>① 사업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나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8. 3. 20.></p> <p>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p> <p>2. 제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었던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p> <p>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p> <p>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p> <p>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p> <p>⑥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⑧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013.03.23 개정	2013.03.23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p>① 제4조에 따른 허가할 용기(이하 "고압가스"라 함)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전문개정 2007. 12. 21.]</p>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018.12.11 개정	2018.12.11	제20조(사용신고 등)	<p>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전원가스·압축모노질렌·압축디브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p> <p>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p> <p>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p> <p>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p> <p>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p> <p>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8. 12. 11.> [전문개정 2007. 12. 21.]</p>	냉동기의 사용/폐지/중단 신고 내용 발생시 관할 시청에 신고	고압가스(냉동)제조 신고증명서	변동사항 발생시	송기운	
		2014.01.21 개정	2014.01.21	제23조(안전교육)	<p>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 21.></p> <p>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p>	냉동시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교육 이수기간 도래시 교육 진행 신규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보수 : 신규교육 후 1회/3년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증	1회/3년	송기운	
		2013.03.23 개정	2013.03.23	제25조 보험가입	<p>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p>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보험가입증명서	1회/3년	송기운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3.03.23 개정	2013.03.23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p>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p>	냉동기 안전관리규정 개정	냉동기 안전관리규정	개정사항 발생시	송기운	
		2008.07.16 개정	2008.07.16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p>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p>	<p>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작성</p> <p>냉동제조시설 운전일지 작성</p> <p>냉동기 안전교육 실시</p>	<p>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p> <p>냉동제조시설 운전일지</p> <p>냉동기 안전교육일지</p>	<p>매일</p> <p>매일</p> <p>1회/월</p>	송기운	

작성부서	경영지원팀
책임자	송기운
문서번호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등록부(전기사업법)

Rev.	제/개정 일자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2020.01.10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1	전기사업법	2016.01.27 개정	2016.01.27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p>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유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도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p> <p>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p> <p>1. 안전공사</p> <p>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p> <p>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p> <p>[전문개정 2009. 5. 21.]</p>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 ㈜신우전기안전	전기안전 점검 결과서	변동사항 발생시	송기운 / 신우전기안전	
		2016.01.27 개정	2016.01.27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p>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p> <p>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p> <p>[전문개정 2009. 5. 21.]</p>	전기설비 점검 일상점검(4회/월) 반차, 연차 점검(1회/6개월)	전기설비점검결과 기록표	매주	송기운 / 신우전기안전	
		2016.01.27 개정	2016.01.27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p>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p> <p>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09. 5. 21.]</p>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최초 특별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1) : 최초특별교육 후 1회/3년	교육이수증	교육 이수 기간 도래시	송기운 / 신우전기안전	
		2013.03.23 개정	2013.03.23	제65조(정기검사)	<p>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09. 5. 21.]</p>	검사 기간 도래시 정기검사 실시	정기검사 실시 확인서	1회/3년	송기운 / 신우전기안전	

작성부서	경영지원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등록부(소음·진동관리법)	Rev.	제/개정 일자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책임자	송기운			2020.01.10				
문서번호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관련 조항	법규 요구사항	사내 관리사항	관련 문서	관리주기	담당자	준수평가
		2013.08.13 개정	2013.08.13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p>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p>	배출시설 신고/변경 소음 : 해당없음 진동 : 유압식 프레스/컴프레사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동사항 발생시	송기운	
		2020.05.26 개정	2020.05.26	제19조(환경기술인)	<p>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9.></p> <p>②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p> <p>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2009.06.09 개정	2009.06.09	제46조(환경기술인 등 의 교육)	<p>①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